

日本石油産業의 生存戦略

一大韓石油協会 弘報室一

1. 1次 石油危機후 10年間의 回顧

19 73년과 1982년을 비교해 보면, 1973년의 1차에너지 供給量의 78%를 차지하였던 石油는 1982년에는 16%가 감소된 62%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石油 소비량은 2 억 3,400만 Kℓ에서 5,300만 Kℓ가 감소된 1 억 8,200만 Kℓ로 22% 저하되었다.

石油消費量 감소의 내역을 살펴 보면 B-C油 5,200만 Kℓ, 나프타 1,500만 Kℓ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挥發油은 軽油와 함께 각각 820만 Kℓ, 530만 Kℓ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原油處理시설은 541만 B/D에서 594만 B/D로 53만 B/D가 증가하였지만, 가동률은 89%에서 55%로 34%나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으며, 売出額이익율도 1.5%에서 0.8%로 저하됨과 동시에 自己資本비율도 8.1%에서 4.5%로 악화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石油産業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세를 살펴 보면, 우선 해외에서는 2차에 걸친 石油危機에 의해 原油代의 급격한 上昇과 메이저에 의한 原油供給이 대폭 줄어든 반면(74%에서 43%), D-D 및 G-G原油가 큰 몫(45%)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国内정세로는 ① 환경대책이 강화되고, ② 제1차 石油危機 대책으로서 도입되었던 灯油를 중심으로 하는 行政指導價格이 常存하게 되어 石油는 政治상품화 되었으며, ③ 石油備蓄이 강화되어 비축코스트 부담이 높아졌고, ④ 代替에너지 대책이 강화되어 石油産業은 축소, 정리라는 제도적인 태두리가 굳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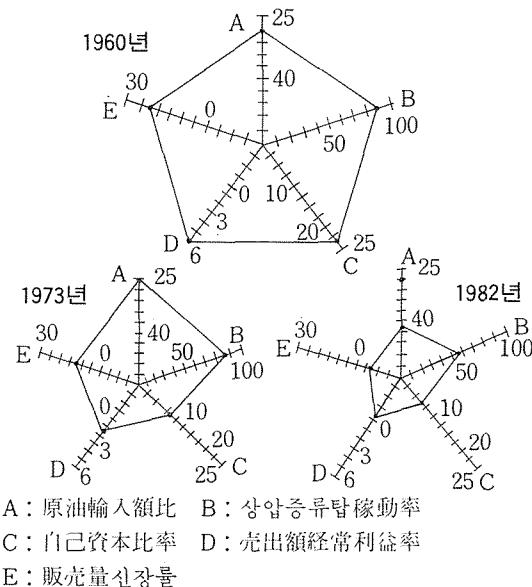
2. 石油業法 制定후 21년간의 回顧

原油輸入의 자유화에 기초를 두어 1962년에 제정된 石油業法下의 石油産業은 약 21년 동안에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다.

〈그림-1〉에 나타나듯이 石油産業의 모습은 당시의 원만한 모습에서 쪼그라들어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原油代金이 売出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石油産業 내부에서의 精製, 流通부문의 合理化여지가 줄어들었으며, 석유제품판매량의 증가는 대폭으로 둔화되었고, 가동률 또한 저하되어 收益의 감소와 아울러 財務구조의 악화가 나타났다.

〈그림-1〉 石油産業의 모습



〈表-1〉 日本 石油産業의 生存戦略 檢討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前提条件	市場動向展望		市場成績에 대한展望	
		短·中期(1~3年)	長期(4~7年)	石油産業	國民經濟
現狀維持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独禁法 ○石油業法 ○朝鮮販売業法 ○石油備蓄法 ○石油需給適正化法 (緊急時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低收益 상황하에서 기업간 격차는 확대됨. ○ 값싼 제품輸入 압력이 높아지고, 需給·價格 양면에 문제가 발생 ○ 금융기관에 대한 依存度는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需要의 輕質化에 의해 2차設備 도입으로 코스트부담 증대 ○ 제품 수입문제는 심각 ○ 기업의 自主的 再編의 기운이 높아지지만, 판매부문은 여전히 늦어짐. ○ 構造改善策의 일부 (精製設備의 처리, S/S의 統一, 廃合·集約화 등)는 地域경제,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 지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場 구조는 파당경쟁적이며, 占有率싸움이 계속되고, 재무구조도 현재와 같으나, 기업간 격차가 확대됨. ○ 民族系의 収益力은 여전히 낮은데政府, 은행과의 관련하여 현상이 그럭저럭 계속됨. ○ 제품 输入의 증대에 따라 마이너스 효과를 강하게 받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産業의 파당경쟁질에 따라 대체로 低價의제품을 공급받게 됨. ○ 그러나 값싼 제품輸入의 시도는 제한되며, 石油産業의合理化지연에 따라 不利益이 발생함. ○ 기업 노력에 비해서는 石油産業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이 전전이 없음.
自由競争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独禁法 ○石油業法과 朝鮮販売業法 철폐 S/S를 포함한設備의 新增設·생산계획은 자유, 제품가격 규제 철폐, 原油·제품수입도 자유 ○石油備蓄法(輸入기업에 대한의무부과) ○石油需給適正化法(緊急時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油種에 걸쳐 판매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의 변화를 삼매지며 財務構造가 급속히 악화됨. ○ 제품輸出入의 증대에 따라 일부제품은 需給 불균형이 생기고供給부족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제품輸入은 電力, 鐵鋼을 중심으로 증대하지만 量的·質의 면에서 볼 때 반드시安定의인 것만은 아닙니다. ○ S/S數의 감소, 系列변경 격화 ○ 금융기관의 選別용자가 강화되고, 集約·再編成의 계기가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종합상사 주도에 의한 集約化 진전, 동시에一部民族系会社가 外國資本系 산하로 재編될 가능성 있음. ○ 2차設備를 포함한 과잉설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採算이 맞지 않는 油種의 公급력은 構造의으로 저하될 경향 있음. ○ 產油국과 新外國資本의 市場침입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再編이 이루어진 결과 精製, 元壳, 流通에 걸쳐 4~5 그룹으로 집약화됨. ○ 제품가격은 短期의 으로 하락하지만, 中期의으로는採算性을 회복하고 그 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상승할 수도 있음. ○ 市場구조는 寡占화되고, 財務構造도 서서히 호전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寡占企業간의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음. ○ 開発原油와 G-G原油 등도 새로운 경쟁 조건 하에 처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中期의 으로는価格의 하락에 따른 長点을享有한 경우도 있음. ○ 기업再編 후에는 시장에 입각한 寡占価格가 형성될 것이지만, 石油会社間의 경쟁이 격화된다면自由化前에 비해 반드시消費者에 불리하지 않은 가격형성이 이루어질 것임. ○ 產油국과 新外國資本의 침입이 있게 되면 새로운 가격하 경쟁의 要因이 될 것임.
政府介入強化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独禁法에 除外規定 ○石油新法 制定 생산, 输入 계획과 가격에 대한 권고에서 指導로, 제품輸出へ도 관리 ○朝鮮販売業法 강화 ○石油備蓄法 ○石油需給적정화법(緊急時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策箇시의 中心体로 国營石油会社를設立 ○ 民族系는 2~3 그룹 정도로 집약되고, 그 중의 1그룹에는 政府가 1/3 資本增加 ○ 市場은 外資系, 民族系의 大企業과 国營会社의 그룹으로 과점화 될 것임. ○ 現재의 外資系 그룹의 収益우위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超過利潤」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營会社의 精製·販売비율이 서서히 높아짐. ○ 国營会社의 적정이 윤 확보가 가능하다면, 다른 그룹도 이와 비슷한 利益수준이 됨. ○ 그러나, 유효적절한 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石油産業의 만성적 저하와 破綻화를 초래하고 일부外資系의 철수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營会社의 士氣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政府援助의 정도가 문제임. ○ 타그룹과의 경쟁관계에서 비롯된 經營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면 합리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계企業이 溫存할 수 있는 정도의 稅金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임. ○ 外資系의 초과이윤또는 国營会社의 대목적 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조치가 필요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寡占화라는 점에 서需要者에게는 반드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国營会社가 그 한계가 되어 일정한 가격上限이 설정될 수 있음. ○ 国營会社의 内部에서의 機能이 경쟁적으로 되지 않고, 国民經濟적으로 보아 損失이 될 가능성이 큼. ○ 石油의 安定供給을 위한 中心体로서의 역할은 평가할 만 하지만, 경제効率과 低廉公급의 면에서는 문제가 있음.

3. 今後의 石油需給과 課題

앞으로 石油제품의 需要는 省에너지, 代替에너지導入 및 경제활동의 低成長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가를 기록하진 않을 것이다. 產油國을 중심으로 하는 製品輸入의 압력은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国内제품가격을 海外제품가격에 連動시켜 일부 제품의 수요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려 해도 国内수요량의 증가는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課題로서는 ① 석유수요의 鈍化에 따라 石油会社에 의한 전반적인 売出增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設備의 遊休化를 막기 위하여는 관련설비의 축소 및 비대해진 流通, 販売부문의 정리가 필요하며, ② 中間溜分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設備의 高度化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資金조달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4. 石油產業의 生存전략

(1) 石油產業法下의 石油產業과 石油政策

石油產業의 목적은 「石油精製業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함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向上에 이바지함」이라 되어 있다. 石油產業法은 제정 당시에 예상되었던 石油產業의 과당경쟁을 조정하고, 과잉투자 등에 의한 精製코스트 등이 상승하거나 기초물자로서의 石油需給의 현저한 혼란과 不公正한 경쟁이 초래될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主眼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정이래 石油產業內의 과당경쟁은 尚存하여 왔으며, 오늘 날과 같은 빈약한 얼굴의 石油產業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欧美 石油產業의 스피디한 대응에 비해 日本의 움직임은 신속하지가 못하다.

(2) 日本의 石油產業의 生存戰略

日本의 石油產業이 앞으로 순탄치 못한 환경 속에서 自主的으로 타분야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현재의 악체화된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石油產業 자체의 힘을 再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함으로써 生存戰略을 살펴 보았다.

〈表-1〉은 現在의 石油政策을 그대로 밀고 나

갈 경우, 石油政策의 베이스로 되어 있는 石油產業法 등을 폐지할 경우, 반대로 石油產業法을 강화하고 政府의 정책개입을 강화할 경우의 3 가지에 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케이스이던 国民經濟와 国民生活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石油產業의 자립적인 활성화와 체질강화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自由競爭의 케이스는 초기에는 国民經濟와 石油產業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政府개입을 강화하는 케이스는 국제적으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現実妥當性을 缺하고 있고, 現狀維持의 케이스에도 새로운 상황은 전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이 제 4의 케이스로서 現行 石油產業法을 존속시키는 등 현상유지의 전제가 되는 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행정지도의 내용을 明示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自由競爭性을 도입할 것이 생각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면, 石油產業法은 제정 이래 21년간에 걸쳐 日本의 石油產業의 제도적인 테두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급격히 변경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 있어서 정책적 간섭 및 원조를 줄여나감으로써 石油会社의 自主的인 行動의 场을 부여하며, 生產調整과 같은 행정지도는 緊急時に 한정하고 平時는 1年間의 生产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로 기업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또한 財務構造의 개선을 위하여는 달러貨 변동에 따른 受益計上時에도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개입을 배제하고 價格決定은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장래의 예기치 못할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措置에 따라 国民 경제와 国民생활에 현저한 支障이 초래되고 石油產業 자체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그 時点에서 새로운 정책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石油需要의 신장률의 鈍化, 2차설비의 도입 필요성, 產油國으로부터의 製品輸入 압력의 증대 등의 마이너스要因에 대처하면서 弱化된 石油產業을 신뢰받을 수 있는 체질로 再構築하는 것이 戰後 日本경제의 부흥에 기여해 온 石油產業에 대해 보답하는 国民의 課題라 할 수 있을 것이다.